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181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장철민의원안)	3

I. 개요

1.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18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장철민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6. 30.

(3) 회 부 일 : 2025. 7.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연간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비수도권 지역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청년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 국회미래연구원의 자료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청년가구의 수도권 이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이유로 한 수도권 전입 비중은 2021년 기준 48.0%로 2011년에 비해 16.3%p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비수도권 청년인구의 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 미충원인력의 59.5%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여 수도권 지역에 비하여 비수도권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비수도권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려 비수도권 청년의 지역 안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장철민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30조) ○ 대상: - 청년(만 15세~34세),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 -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동일업종기업 요건 폐지) - 퇴직사유: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및 가족돌봄 - 퇴직기간: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 ○ 요건:중소기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감면내용: 취업일부터 3년간(청년은 5년간) 중소기업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70%(청년은 90%) 감면 ○ 감면한도: 200만원 ○ 적용기한: 2026. 12. 31.까지 취업	○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 대한 감면한도 확대 ○ 대상: - (현행과 같음) ○ 요건: 현행과 같음 ○ 감면내용: (현행과 같음) ○ 감면한도: 200만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청년의 경우 300만원) ○ 적용기한: (현행과 같음)

* 장철민의원안 2025. 6. 30. 발의(의안번호 11181)

□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와 관련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현행 소득세 감면 한도인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¹⁾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는 세후소득의 증대를 통해 경제적 약자인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려는 취지에 따라 2011년 세법개정으로 도입되었음.

신설 당시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2013년 말까지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하도록 규정하였다가, 2013년 세법개정으로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애인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감면율은 50%로 하향 조정하였음.

이후 2015년 세법개정으로 감면율을 70%로 다시 상향 조정하는 대신 연간 150만원의 감면한도를 설정하였고, 2016년 세법개정부터는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도 감면대상에 포함하였으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며, 2018년 세법개정 시 청년에 대한 감면율을 90%로 상향하였음.

2022년 세법개정부터 감면한도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2023년 세법개정으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년까지 취업한 사람까지로 연장하였음. 2024년 세법 개정으로 기존 대상자 중 ‘경력단절 여성’이,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었던 ‘경력단절 근로자’로 확대되었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개정 연혁]

구분	2011 년 개정	2013년 개정	2015 년 개정	2016 년 개정	2018년 개정	2022 년 개정	2024년 개정
적용대상	청년	청년 · 고령자 · 장애인		청년 · 고령자 ·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청년 · 고령자 · 장애인 · 경 력단절 근로자
감면기간	취업후 3년간		취업 후 3년간 (청년은 5년간)				
감면율	100%	50%	70%		70%(청년 90%)		
감면한도	-		150만원			200만원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24년 1조 1,38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5년에는 1조 1,638억원, 2026년에는 1조 2,26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연도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5 년 (전망)	2026 년 (전망)
조세지출 규모	6,059	7,792	8,397	9,667	9,609	11,384	11,638	12,260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세액 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일자리의 불균등한 분포로 인해 심화되는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청년가구의 주거 이동사유를 볼 때 2011년에 비해 2021년 청년들의 직업으로 인한 이동의 비중이 높아졌고²⁾, 20~24세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입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수도권에 정착하는 시기도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음.³⁾ 이에 대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의 지역배치가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되었음.

이에 개정안과 같이 수도권 외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한도를 300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기대소득이 상향됨으로써 구인을 위한 수도권으로의 전입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청년을 제외한 중소기업 취업 세액공제 대상자와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음. 현행 규정은 중소기업 취업자 중 60세 이상인 사람, 경력단절 근로자, 청년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청년’에 대하여만 특례를 부여할 경우 60세 이상의 노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2) 청년(20대~30대) 가구 중 수도권 전입 사유중 일자리의 비중은 20대 남성(20~24세) 41.4%, (25~29세) 48.0%

3)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국회미래연구원, 2022.11.

둘째, 현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8제1항은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방에서 채용하는 청년 등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⁴⁾⁵⁾

셋째, 개정안을 통한 세액공제한도의 확대의 효과성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세액공제한도를 100만원 상향함으로써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려는 것인데,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를 경우 ‘직업’ 이외에도 가족, 주택 교육 등 기타 다양한 사유를 근거로 수도권으로의 전입을 결정한 청년들이 과반수 이상인 상황에서 한해 100만원의 세액공제한도 상향이 수도권 거주를 포기하고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할 정도의 유인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넷째, 동 조세지출에 따른 평균 감면액은 88만원 수준으로 납부세

4)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5) 또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제도를 감안하였을 때,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세액 공제한도 상향은 청년 등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액 대비 감면 한도에 여유가 있는 점, 최근(2023년) 감면한도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므로 해당 개정의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2023년 기준 근로소득자의 33%가 면세자인 상황에서 동 개정안을 통한 세액공제 한도의 확대는 해당 정책대상자들에게 효과성이 크지 않은 반면, 제도변경의 수혜는 고소득자에게 집중될 수 있는 점 등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개정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자의 경우 동 개정의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는 한편, 총급여가 5,000만원 이상 구간부터 개정안에서 상향한 한도(100만원)에 따른 추가 감면의 수혜를 온전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됨.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세수효과 추계 (2023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총급여 액 규모	현행					개정안 에 따른 1인당 추가 감면액	세수 효과 (억원)
	적용 인원1)	1인당 산출 세액	1인당 소득세 감면 대상 금액	1인당 소득세 감면액	1인당 결정세 액		
	A	B	C= B×0.9	D	E	F=MIN (C-D, 백만원)	G= -F×A
합계	51,020	3.6	3.2	2.0	1.2		-329.9
1천만 이하	-	-	-	-	-	-	-
1천만 이하	-	-	-	-	-	-	-
2천만 이하	-	-	-	-	-	-	-
3천만 이하	-	-	-	-	-	-	-
4천만 이하	5,887	2.4	2.1	2.0	0.2	0.1	-6.8
4천만 이하	12,150	2.6	2.3	2.0	0.4	0.3	-38.9
5천만 이하	12,545	2.9	2.6	2.0	0.6	0.6	-79.8
6천만 이하	13,309	3.6	3.3	2.0	1.1	1.0	-133.1
8천만 이하	5,698	5.1	4.6	2.0	2.4	1.0	-57.0
1억 이하	983	8.8	7.9	2.0	5.9	1.0	-9.8
2억 이하	351	17.5	15.8	2.0	14.6	1.0	-3.5
3억 이하	22	56.4	50.8	2.0	53.4	1.0	-0.2
5억 이하	64	87.2	78.5	2.0	84.6	1.0	-0.6
10억 이하	9	202.5	182.3	2.0	199.6	1.0	-0.1
10억 초과	2	401.2	361.1	2.0	397.4	1.0	0.0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1181) 비용추계서

□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과 같이 비수도권 청년
취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를 확대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2026년 399억원 등 2026~2027년 2년간 총 837억
원(연평균 418억원)으로 추계됨.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6~2027년)]

(단위: 억 원)

	2026	2027	누적	연평균
장철민의원안	△399	△438	△837	△418

문 의 처

02)6788-5149